

제 3700 항

소비자 서비스 방침

<u>항</u>	<u>제목</u>	<u>페이지</u>
3701	일반	1
3702	서비스 조건	1
3703	서비스 지역	1
3704	서비스 연결 및 계량기	1
3705	서비스 설명	3
3706	신청 절차	6
3707	특별 계약	7
3708	수돗물의 재판매와 다른 장소로 배수 금지	8
3709	시큐리티 디파짓	8
3710	통지	10
3711	수도 계좌에 대한 청구	11
3712	청구서 지불	11
3713	가정용 수도 서비스의 미결제 및 서비스 중단	13
3714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
3715	지불 조정	16
3716	기록 상의 소비자	17
3717	미결제 이외의 서비스 중단	18
3718	계량기 오류	19
3719	소비자/사용자 계좌 정보	20
3720	누수 크레딧	20

제 3700 항 소비자 서비스 방침**§ 3701. 일반**

본 항은 수도국이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수도 서비스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재량권에 따라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는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본 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건전한 사업적 원칙에 입각한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도국의 방침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분류 내에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일괄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수도 서비스의 가격이 선정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등급에 대한 특별 요율 범주 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실제 비용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본 방침들은 수도국 소비자들과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도 서비스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공되는 지침입니다.

§ 3702. 서비스 조건

수도국은 본 방침에서 제시 한대로 수도 서비스를 위한 지원이 완료되면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은 이상, 프로젝트가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중단될 것입니다.

§ 3703. 서비스 지역

수도국은 경계선 이내의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잉여 용수를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교환 계약과 특별조건 및 정해진 요율에 따라 판매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 3704. 수도 서비스 연결 및 계량기

A. 설치. 수도국은 모든 수도 서비스를 계량기로 측정하며 이에 합당한 요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 신청자의 비용으로(그리고 2500 항에 나오는 요율, 수수료 및 요금에 따라), 서비스 연결 및 해당 크기의 계량기를 신청자가 요청하는 위치에 장치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국이 각 서비스 연결 및 계량기에 관한 크기 및 위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도 서비스 연결 및 계량기는 수도국의 배수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수도국(또는 공공) 통행권이나 지역권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B. 연결수수료 지불. 연결비는 수도 서비스 신청 당시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국이 이를 수령하고 승인하면 신청자는 승인 날짜로부터 1년 동안 배수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만약 수도 연결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신청 날짜에 유효한 수수료 및 요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 전에 지불한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및 요금에 적용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새로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취소되고 행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C. 계량기 위치 변경 및 부정 훼손.

1. 소비자/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옮겨지는 계량기 또는 서비스 관은 소비자/사용자의 비용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수도국의 목적으로 인해 옮겨지는 계량기 또는 서비스 관은 수도국의 비용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소비자/사용자가 계량기 위치의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작업을 위해 필요한 실제 시간 및 재료비에 근거하여 금액을 청구합니다. 소비자 쪽의 계량기에 재연결 작업은 소비자/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계량기, 계량기 함 및 서비스 관들은 수도국의 재산이며 수도국 이외의 직원이 훼손하거나 위치를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수도국의 의견 상 “일정 계량기 또는 서비스 관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계량기나 서비스 관이 훼손되었다거나 또는 외관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사용자는 통지를 받게 되며 해당 훼손을 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 그리고/또는 계량기 또는 서비스 관을 수도국이 결정한 위치로 다시 옮기는 작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D. 계량기 크기 그리고/또는 분류 변경

1. 수도국이 기존 계량기를 다른 크기의 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변경 비용은 새 계량기의 실제 비용과 새로운 서비스 라인 설치 비용이 더해집니다. 계량기 크기를 늘리려면 더 큰 서비스 라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소비자/사용자 부담입니다.
2. 계량기 크기 확대나 서비스 연결 분류 변경에 대한 자본 시설 요금은 신청 시 수도국에서 원래 받은 금액과 요청하여 확대된 요율 간의 차액입니다. 또한 소비자/사용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수수료 및 요금(예. 샌디에고 카운티 수도당국 용량요금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기존 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또는 관련 재료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만약 기존 사용 중인 계량기를 가진 소비자/사용자가 땅의 구획을 나누는 경우 소비자/사용자는 원래 신청 시 실제로 지불한 액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원래 땅 구획 이내에서 계량기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다른 부동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동안 “사용 중단” 상태의 계량기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레딧은 계량기, 수도 서비스 관 또는 기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수도국 서비스는 게시된 영업시간 동안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수도국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한 모든 경우에는 2500 항의 요율, 수수료 및 요금 항에 따라 시간 외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본 방침의 목적을 위해 영업일 오후 4 시 30 분 이후에 요청된 서비스는 시간 외라고 인정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미결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소비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은 미결제된 요금을 영업종료 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 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은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 소유권. 서비스 연결 및 계량기는 수도국의 재산이며 수도국은 이를 수리, 교체 및 유지관리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 유지관리. 계량기와 계량기 함을 포함하는 서비스 연결은 수도국의 비용으로 수리되고 유지관리 되지만 소비자/사용자신이나 소비자/사용자의 가족, 손님, 초대된 사람 또는 대리인의 태만으로 인해 일어난 훼손에 대해서 수도국이 실행한 수리는 소비자/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국은 밸브, 조절기, 필터 또는 수도관이나 계량기의 배출 끝 부분을 넘어가는 도구에 있어서는 설치나 유지관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G. 계량기 함의 방해물. 유류, 유독성, 유해 또는 오염된 액체 또는 폐기물, 쓰레기, 토양, 건축 자재 또는 기타 물질, 물체 또는 방해물을 미터나 기타 수도국 시설의 내부, 상부 또는 주변에 놓거나, 처리 또는 배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함 또는 기타 수도국의 시설이 나무, 관목 및 식물에 의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방해되거나 가려져서 의도된 사용이나 접근을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도국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소비자/사용자는 수도국의 계량기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10 일 이내에 치우거나, 자르거나 그리고/또는 제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질, 물체 또는 장애물을 청소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수도국은 모든 물질이나 물체를 소비자/사용자의 비용으로 청소하고 그리고/또는 제거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 비용은 다음 청구서 주기에 해당 소비자/사용자의 청구서에 포함할 것입니다.

H. 시설물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비자/사용자가 수도국에게 계량기 및 계량기 함을 포함하여 설치, 작동, 유지관리, 점검, 수리, 교체 또는 서비스 제거를 목적으로 소비자/사용자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허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서비스 중단의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 3705. 서비스 설명

A. 공급. 수도국은 소비자/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그리고 수돗물 부족이나 공급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국은 제공하는 수돗물의 품질이나 수압을 보장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

B. 품질. 생활용수 목적으로 수돗물을 제공하는 경우 수도국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식수의 안전한 배수를 위해 요구되는 수돗물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 시스템 운영 요금. 수도 서비스를 위한 모든 계량기는 2500 항, 요금, 수수료 및 요금에서 명시한 시스템 운영 요금의 대상이 됩니다.

D. 서비스의 분류: 수도국이 설치한 모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1. 단독 주택 – 단독 주거 또는 이와 상응 하는 주거 형태 및 관련된 조경에 대해 한 개의 계량기

예:

- 분리된 단독 주택
- 단독 모빌홈
- 기타(콘도, 타운홈,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각각의 계량기가 설치된 개발 단지 주거 형태)
- 화재 –단독 주택 사용자의 화재 방지를 위한 계량기

2. 다세대 주택 – 계량기(들)가 여러 사용자들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다세대 주거형태 (기관단체 상황 포함되지 않음)

예:

- 마스터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
- 마스터 계량기가 설치된 모빌홈 단지
- 기타(마스터 계량기가 설치된 콘도, 타운홈,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및 개발 단지 주거 형태)
- 화재 – 다세대 주택 사용자의 화재 방지를 위한 계량기

3. 관개수 – 식수를 야외 관개수로 사용할 때의 계량기

예:

- 차단할 수 없는 농업용수 – 단일 목적을 위한 계량기
- 차단할 수 없는 농업용수 – 농업용수/생활용수 모두를 위한 계량기
- 차단할 수 있는 농업용수 – 단일 목적을 위한 계량기
- 차단할 수 있는 농업용수 – 농업용수/생활용수 모두를 위한 계량기
- 조경

4. 단일 상업용 - 단일 사용자를 위한 단일 계량기를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으며 서비스 그리고/또는 제품을(또는 기타 상업용 장소) 제공/유통하는 사용자들

예:

- 사무실
- 서비스
- 식당
- 호텔/모텔/여관
- 공사장
- 주유소
- 세탁업
- 세차 서비스
- RV 공원
- 헬스클럽/체육관
- 소매업
- 자동차 수리
- 화학품 창고
- 시멘트 혼합 공장
- 구급차 서비스
- 도장 및 차량 수리 업체
- 대양선 검사 설비
- 냉각장치 수리.판매 업체
- 기타
- 화재 - 단일 상업 업체의 화재 보호를 위한 계량기

5. 상업용 - 다수 사용자를 위한 계량기(들)를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으며 서비스 그리고/또는 제품을(또는 기타 상업용 장소) 제공/유통하는 사용자들

예:

- 사무실
- 서비스
- 소매업
- 혼합 사업체 건물/스트립 몰
- 기타
- 화재 - 다수 사업체의 화재 보호를 위한 계량기

6. 산업 - 재료 그리고/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정하는 사용자(SIC 법 2000-3999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예:

- 생산 시설
- 공정 시설
- 기타
- 화재 - 산업체의 화재 방지를 위한 계량기

7. 기관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와는 상관 없음)

예:

- 병원/의료 기관
- 교회
- 공립학교
- 정부
- 시
- 특별 구역
- 특별 관리 시설
- 화재 - 기관의 화재 방지를 위한 계량기

8. 재활용 - 주정부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한 재활용 용수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용자

예:

- 조경 관개수
- 특별한 상업용/산업용
- 화재

§ 3706. 신청 절차

A. 필요조건. 계량기 한 개에 대한 수도 서비스 또는 설치 신청은 해당 건물의 소비자/사용자가 매니저나 담당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모든 요금, 수수료, 요금에 대해 지불 책임이 있고 수도국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사용자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설명된 서비스를 열거나, 옮기거나, 재개하는 경우 반환 불가한 계좌설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인은 서비스 조건이나 신용상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신규 서비스 연결을 제외하고 원하는 서비스 가동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 일 전에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청인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설명한 복구 서비스 요금 및 모든 적용되는 시간 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 신청인에게 이전에 제공되었던 서비스. 신청인에게 이전에 수도국이 제공하였던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전액과 모든 적용되는 연결, 자본 설비 및 설치 요금 및 수수료, 디파짓, 벌금 등이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수도국은 서비스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C. 제한. 수도 서비스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장소 그리고/또는 토지구획에만 한정됩니다. 원래의 토지구획에서 분리된 모든 구획을 위해 필요한 수도 서비스 및 수도 계량기를 위해서는 신규, 별도 신청서가 요구됩니다.

D. 수도국 신청서가 없는 수돗물 사용 일정 장소를 취득하여 수도국에 신청하지 않고 물을 사용한 사람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명시한 적용 벌금 이외에도 마지막 계량기 검침 날짜로부터 배수된 수돗물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과거 2 년 동안 소비된 수돗물 양의 평균에 근거하여 비용을 추산할 것입니다. 만약 2 년 이하의 정보만 있다면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분류의 서비스를 받은 다른 소비자/사용자의 사용 양과 비교하여 청구액을 추산할 것입니다.

E. 공동 서비스에 대한 개인 책임 단일 서비스를 위하여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별도로 모두 책임이 있으며 서면 요청 및 양 당사자들의 승인이 있을 경우, 주기적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 건물에서 소비자/사용자의 장비 및 수돗물 사용 변경. 수도 서비스의 크기, 성격, 장비 또는 작동의 범위에 있어서 주요한 변경을 예상하는 소비자/사용자나 또는 작동변경이 수돗물 사용의 현저한 증가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해당 변경의 성격에 대해 수도국에 사전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요한 변경"과 "현저한 증가"라는 말은 수도국의 재량권에 따라 더 큰 계량기, 용량 또는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로 변경을 예상하는 소비자/사용자는 수도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 중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나 발견에 있어서 수도국이 변경된 장비 또는 사용을 확인한 후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의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은 수돗물 종류/원천, 서비스 관의 크기, 계량기 크기, 교차 연결 통제 장비 및 청구서 우송 횟수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사용의 증가로 인해 계량 장비의 작동 문제가 일어난 경우 수도국은 적합한 크기의 계량기 설치 이외에도 해당 기간 동안에 과거 2 년 동안 사용한 평균에 근거하여 수도 사용량을 추산할 것입니다. 만약 2 년 미만의 정보만 있다면 동일한 분류의 수도 서비스를 같은 시기에 받은 다른 소비자/사용자가 사용량과 비교하여 청구액을 추산할 것입니다. 수도 서비스의 장비 또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본 행정법의 적용 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707. 특별 계약

신청서 이외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서비스 전에 필요합니다.

A. 2500 항 요율, 수수료, 요금에 포함된 항에서 요구할 때. 조건의 기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입니다.

B. 주요 수도관의 영구적 연장 공사가 필요한 경우

C. 임시 서비스를 위해

D. 기타 자격이 있는 유틸리티 연결을 위해

E. 대기 서비스 또는 화재 서비스를 위해

F. 교환계약

G.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

§ 3708. 수돗물의 재판매와 다른 장소로 배수 금지

수도국의 소비자/사용자가 받은 수돗물을 재판매 하거나 해당 수돗물을 수도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사용자의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 이외에 다른 장소 그리고/또는 구획으로 보내는 것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3709. 시큐리티 디파짓

A. 권한. 이사회는 아래의 상황에 적합한 계좌를 신규로 열거나, 기존에 있거나 재개하는 경우 총괄 매니저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디파짓 액수는 2500 항 요율, 수수료, 요금에 명시한 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B. 새로운 서비스의 신청서 접수 시, 만약 신청인이 수도국에 자신의 신용적 가치를 결정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디파짓이 요구됩니다.

C. 가정용. 가정용 소비자/사용자는 만약 다음 중 하나가 일어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디파짓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사용자가 서비스 신청 당시 비교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공공요금 납부 역사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만족할 만한 납부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12 개월 기간 동안 1 회의 연체만
 - b) 반환된 수표에 대한 벌금기록 없음
 - c) 미결제에 의한 서비스 중단기록 없음
 - d) 파산이나 유치권 신청이 없음
2. 만약 신규 소비자/사용자가 수도국이나 기타 공공 기관과 이전의 공공요금 청구 역사가 없다면 소비자/사용자가 제출한 현재의 만족할 만한 신용 보고 점수를 통해 신용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한가지 방법은 신용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 중 어느 것이라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질처분, 파산, 유치권 또는 지불판결 등입니다.

3. 소비자/사용자가 수도국과 이전 서비스 기록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어날 경우입니다.
 - a) 12 개월 기간 안에 1 번 보다 많은 미결제 기록
 - b) 12 개월 기간 안에 1 번 보다 많은 잠금 기록(48 시간 통지)
 - c) 미결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있었던 경우
 - d) 반환된 수표가 1 번 또는 이상 있었던 경우
 - e) 과거에 불량한 채무 탕감
 - f) 수도국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시작한 기록
4. 만약 다음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서 디파짓이 추정됩니다.
 - a) 12 개월의 기간 동안 1 번 보다 많은 48 시간 잠금 통지
 - b) 미결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 c) 12 개월 안에 1 번 보다 많은 반환된 수표 기록
 - d) 소비자/사용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수도 서비스에 재신청 한 경우
5. 이미 사용 중인 계좌에 대해 디파짓 액수를 재평가하여 인상합니다.
 - a) 12 개월의 기간 동안 48 시간 잠금 통지 수수료가 1 번 보다 많이 발생
 - b) 미결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 c) 12 개월 안에 1 번 보다 많은 반환된 수표 기록
 - d) 조사 실시 후 잠금 통지표가 발행되거나 수도국 장비가 훼손되거나 무단으로 수도물을 사용한 경우
 - e) 소비자/사용자가 수도국의 규정 전체 또는 부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만약 다음과 같은 범주에 근거하여 소비자/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지불 기록을 세우고 유지하는 경우 마지막 디파짓 지불의 날짜로부터 24 개월 후 디파짓 전액이 소비자/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 a) 12 개월 당 오직 한 번의 미결제 요금 허가
 - b) 48 시간 잠금 통지 없음
 - c) 미결제에 인한 서비스 중단 없음
 - d) 지불된 수표 반환 없음
 - e) 파산 또는 유치권 신청 없음
 - f) 지불 조정이나 할부상환이 현재 없음

D. 비가정용 디파짓에 관한 지침

1. 수도국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나와 있는 디파짓을 모든 신규 신청자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수도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디파짓을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디파짓 액수도 평가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a) 12 개월 기간 안에 1 번 보다 많은 잠금 요금(48 시간 통지) 발생
 - b) 미결제에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기록
 - c) 12 개월 안에 1 번 보다 많은 반환된 수표 기록
 - d) 소비자/사용자가 잠금/꼬리표를 자르거나 수도국 장비를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도물을 사용한 경우
 - e) 소비자/사용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그리고/또는 유치권 신청이 있거나 서비스 재신청을 한 경우
 - f) 소비자/사용자가 지역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 디파짓 금액 반환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디파짓 금액은 수도국이 신청자에게 받아야 하는 미결제 금액에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 3710. 통지

- A. 사용자/소비자 통지 소비자/사용자에게 통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소비자/사용자에게 기록 상에 있는 소비자/사용자의 현재 주소로 배달 또는 우송합니다. 상황이 허락되거나 비상 시에는 수도국이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문손잡이 행거를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실용적인 수단을 통해 통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국이 가장 최신의 연락처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사용자의 책임입니다.
2. 미결제 통지는 기록 상의 소비자/사용자 주소로 보냅니다. 기록 상의 소비자/사용자가 수도 서비스를 받는 건물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미결제 통지의 사본을 서비스를 받는 주소로 보냅니다.
3. 만약 세입자가 기록 상의 소비자/사용자인 경우 수도국은 청구서 및 기타 통지서 사본을 건물주에게 보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 소비자/사용자가 보내는 통지. 소비자/사용자가 수도국으로 보내는 모든 통지는 수도 서비스의 개시 또는 중단을 제외하고 수도국 사무실에 구두로 계좌 상의 소비자/사용자 자신이나 허락 받은 대리인이 전달하거나 서면으로 우송하거나 위임 받은 수도국 대표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3711. 수도 계좌에 대한 청구

A. 계량기 검침 및 청구. 계량기는 정해진 기간마다 검침하거나 서비스 개시 청구서, 해지 청구서 및 특별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검침합니다. 청구서는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기록 상의 소비자 주소로 우송합니다. 요금표에 나와 있는 한 달 서비스에 대한 뜻은 청구서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달력 상의 한 달은 아닙니다. 수도국은 상대적으로 더 길거나 더 짧은 주기마다 검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개시 청구서 및 해지 청구서. 만약 수도 서비스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시스템 운영 수수료 및 기타 적용 수수료를 실제 서비스 날짜와 비례 배분할 것입니다.

C. 청구서 발행. 수도 서비스 청구서 및 기타 수수료는 수도 계량기 검침과 적용 수수료가 결정되고 난 후 최대한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우송되거나 제시될 것입니다.

D. 지불 기일 해당 요금에 대해 수도국이 발행하는 청구서는 우송 날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날짜가 지불 기일입니다.

E. 최종 납부 기한. 청구서의 모든 요금은 청구서에 나와 있는 최종 납부 기한이나 이전까지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서 우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날짜로부터 적어도 달력 상으로 21 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 3712. 청구서 지불

A. 지불 방법. 청구서는 수령 즉시 지불 기일이며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은 수도국으로 우편, 전화, 온라인 또는 기타 자동 지불 방법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수도국은 현금, 수표(수취인을 "Rincon Water"라고 표기), 머니오더, 자동이체, 사용허가가 있는 크레딧 카드 및

대빛카드를 받습니다. 소비자/사용자는 수도국이 시간에 맞게 지불을 받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국이 과거에 일부 금액 지불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국은 2500 항 요율, 수수료, 요금에 명시한 편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12 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의 반환 된 수표가 있었을 경우에, 소비자/사용자의 수표/저축 계좌에서 보내는 자동이체는 받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나와 있는 쿠폰을 사용하여 보내는 지불금은 수령일 처리합니다. 쿠폰 없이 보낸 지불금은 추가 절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불금이 완전히 처리되기 전까지는 지불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도국은 쿠폰 없이 보낸 지불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B. 해지 청구서. 수도 서비스 해지 시 발행되는 청구서는 수령 즉시 지불할 수 있습니다.

C. 책임이 있는 당사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록 상의 소비자/사용자(들)의 공동으로 그리고 별도로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D. 소유권 변경. 수수료 추정, 수도세 요율, 디파짓 또는 수도 서비스에 관련한 본 행정법의 적용에 거주지 소유권 변경이나 종류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 과거 계좌의 미결제 금액. 수도국이 소비자/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결제 금액은 연결비용, 미결제 요금, 벌금 및 디파짓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만약 적용된다면 수도 서비스가 시작되거나 복구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F. 반환된 지불금. 만약 소비자가 지불하였고 해당 지불금이 은행을 통하여 반환된 경우에, 2500 항 요율, 수수료, 요금에 따라 반환된 항목의 처리비용이 부과될 것입니다. 청구서 요금, 반환 비용 및 미결제 요금은 마치 지불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이에 연체료를 적용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서비스 복구 전에 디파짓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부도 수표를 지불한 전력이 있거나 해당 요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사용자의 경우, 수도국은 지불 수단이나 형태(현금, 머니오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크레딧 카드 등)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용 소비자/사용자가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수표나 기타 형태의 지불을 발행하여 후에 은행으로부터 반환된 경우, 수도국은 48 시간 통지를 소비자/사용자에게 전하고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G. 미결제. 청구서 우송 후 21 일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미결제로 간주하며 2500 항 요율, 수수료, 요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수도국은 언제든지 서비스 중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 건물에서 나가는 경우. 수도 서비스를 해지하는 소비자/사용자는 반드시 수도국에 이사를 가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 해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소비자/사용자는 수도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요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I. 미결제 기록 제거. 소비자/사용자의 계좌가 완불되었다고 간주되면 해당 계좌에서 요금 미결제 기록은 12 개월에 한 번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 3713. 가정용 수도 서비스의 미결제 및 중단

본 항은 정부법 § 60370 항 이하 그리고 보건법 § 116900 항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98-잠금 보호법),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가정용 수도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A. 미결제 계좌. 수도 서비스 요금은 매 달 수도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의 모든 청구서는 청구서 우송 날짜로부터 달력 상 21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모든 청구서는 미결제로 간주되며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청구서 수령 후, 지불 조정은 청구서가 발행된 지 82 일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날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미결제/중단 실행. 계좌가 미결제로 간주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 청구서 날짜로부터 70 일째 되는 날, 연체 통지가 기록 상의 소비자에게 우송됩니다. (집주인 사본도 우송됩니다.) 해당 연체 통지는 수도국이 만약 12 일 이내에 해당 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미결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적색 통지서 발행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청구서 날짜로부터 76 일째 되는 날,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들)로 자동 전화가 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계좌가 연체되었음을 알리고 잠금 날짜 전에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3. 만약 수도국이 우편이나 전화로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본 방침의 사본을 청구서 날짜로부터 78 일째 되는 날 긴급 통지서를 해당 건물에 게시합니다.
4. 청구서 날짜로부터 83 일째 되는 날 수도국은 미결제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미결제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C.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1. 최대 \$15.00 까지의 잔액은 연체료 및 벌금 없이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2. 청구액이 수도국이 허락한 지불 조정 하에 있을 경우 그리고 해당 소비자가 승인된 지불 조정을 계속 준수하는 경우 수도국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3. 수도국이 일정 소비자/사용자의 청구서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조사 중일 경우
4.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세입자가 주치의로부터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해당 장소의 거주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증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5. 정상적인 청구서 주기 동안에 소비자가 재정적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증명합니다.
 - i. 가구 중 누군가가 다음의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것을 보여줌
 1. CalWorks
 2. CalFresh 일반 보조금
 3. Medi-Cal
 4. 추가 사회 안전보장 수입/주정부 보조 지불 프로그램
 5.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WIC)
 - ii. 해당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위증죄의 처벌 하에 진술하는 경우

본 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는 적합한 조건들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으며 3715 항에 명시된 미결제 요금에 대한 지불 조정 계약을 기꺼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

D. 마스터 계량기 가정용 계좌. 수도국이 한 개의 마스터 계량기를 통하여 가정용 수도를 제공하는 경우, 만약 일정 계좌가 미결제되었으며 수도 중단의 일정이 계획되었을 경우, 수도국은 이를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도국은

해당 통지를 연체 통지(청구서 발행 70 일 후) 시에 하여야 하며 연체된 계좌의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도국의 소비자/사용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는 건물의 개인 주거장소의 도어 행거 형태로 남기거나 해당 건물의 클럽하우스나 관리 사무소와 같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실제 사용자가 수도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 계좌에 대하여 기꺼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임시적으로 해당 계좌의 기록 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마스터 계량기 계좌는 건물 소유주나 건물 관리자가 해당 계좌의 연체 요금을 다 지불하는 시점에 다시 기록 상의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E. 비가정용 계좌. 기타 지불 조정이 납부 기한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이상, 납부 기한 이내에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비가정용 소비자/사용자는 납부 기한 직후부터 서비스 중단에 대상이 됩니다.

F. 서비스 복구를 위한 조건. 서비스 복구는 모든 미결제 요금, 디파짓, 정기 청구서, 행정 수수료, 잠금장치, 계량기, AMI 무선기 및 계량기 함에 대한 훼손 등이 모두 지불된 후에 실시됩니다. 미결제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복구에는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서 규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결제 계좌에 대한 서비스 복구 작업은 영업시간 동안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G. 부당한 서비스 중단. 수도국이 부당하게 중단한 모든 서비스는 수수료 부과 없이 복구됩니다.

H. 수도국의 해결책. 청구서 한 건이 21 일 이상의 기간 동안 미결제된 후 수도국은 다음의 내용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수도세법의 72100 항이 허락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세를 미결제로 처리함.
2. 소장에 서명하거나, 소송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하거나 요금의 징수를 위해 소비자/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집행함.
3. 캘리포니아 수도세법 72102 항이 허락하는 바와 같이 유치권을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
4. 해당 소비자/사용자가 받은 수도국 서비스를 보류할 수 있지만 수도 서비스 중단은 앞서 언급한 항들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5. 수도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괄 매니저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

§ 3714.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A. 청구서 분쟁. 소비자/사용자는 수도 요금 청구서 한 건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은 수도국에 청구서 분쟁 양식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며 청구서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분쟁의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청구서 상에 기재된 계산된 요금이나 소비량에 있어서의 오류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청구서 분쟁 양식은 수도국 웹사이트나 소비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국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시간에 맞추지 못한 분쟁 검토나 조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런 이의나 요청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검토 중인 경우에 해당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는 연체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합하게 접수된 분쟁은 행정 및 재정부 부장이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 및 조사 후 해당 소비자는 서면으로 분쟁에 관한 결정을 통보 받을 것입니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소비자는 제시된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검토를 통해 수도요금 청구서에 수정이 있다면 해당 소비자는 해당 수정과 변경된 지불 정보를 통보 받을 것입니다.

B. 분쟁 결정에 대한 항소. 만약 소비자가 행정 및 재정 부장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소비자는 총괄 매니저의 첫 결정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괄 매니저는 수도국 방침에 따라 모든 문제, 조사 및 요청을 고려하여 최종 행정 검토를 실시하며 총괄 매니저의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 결정이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총괄 매니저가 내린 최종 행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괄 매니저가 내린 결정으로부터 10 일 이내에 총괄 매니저에게 통보함으로써 소비자는 최종 항소를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를 받으면 총괄 매니저는 다음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당 항소사건을 다루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사회에서 열리는 항소의 날짜와 시간을 알릴 것입니다. 이사회는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수도국은 항소가 계류 중인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3715. 지불 조정

A. 자격. 청구서 날짜 이후 82 일 째 날이 되기 전에 소비자/사용자는 계좌의 잔액에 대한 지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로 인해 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도 만약 3713 의 하부 항에 명시한대로 서비스 중단의 예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조건. 지불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반드시 지불조정의 지불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며 후속적 청구서들을 시간에 맞게 지불할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불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수도국이 허가한 지불조정에 대하여 소비자가 연체하거나 후속적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소비자의 계좌는 미결제로 처리되며 3713 항에 명시한 연체 절차를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미결제된 청구서에 있어서 가정용 계좌만이 지불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용 소비자/사용자는 최대 12 개월을 넘지 않는 지불기간 동안 한 건의 청구서에만 할부금으로 나누어서 지불조정이 허락이 됩니다.

수도국은 소비자/사용자가 지불조정 기간 동안 완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불조정을 잘 이행하는 상황에서 지불조정 하에서 연체된 액수에는 추가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A. 만약 소비자/사용자가 지불조정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소비자의 계좌는 미결제 처리되며 3713 항에 명시한 연체 절차를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 3716. 기록 상의 소비자

A. 소비자/사용자 종류. 수도국은 부동산 소유주, 집주인, 부동산 관리인 또는 세입자(거주인)가 계좌의 소비자/사용자가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B. 소유주의 책임. 캘리포니아 수도세법 72102 항에 의거하여 수도 서비스의 요금은 결국 부동산에 남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이 됩니다. 수도국은 실제 사용자, 세입자, 거주자로부터 추정하는 모든 노력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세금에 유치권이나 추가부담금을 부과하여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된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C.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세입자/거주자의 권리. 본 항은 가정용 서비스 주소의 부동산 소유주, 집주인, 부동산 관리인이 기록 상의 소비자로 되어 있으며 미결제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실시하겠다는 의도(연체 통지)를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수도국은 건물의 소유주, 집주인 또는 건물 매니저의 미결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거주인이 기록상의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입자/거주자는 디파짓을 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반드시 서비스의 조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인들이 수도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후속적 요금을 책임진다면 또는 수도국이 수도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있다면 수도국은 해당 서비스를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자격을 위하여 세입자/거주자는 미결제된 계좌의 기록 상의 소비자가 건물 소유주, 집주인 또는 건물 매니저이거나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해당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 세입 계약서, 렌트비 영수증, 거주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서류

또는 시민법 1962 항에 의거한 공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수도국의 재량권에 의존합니다.

4. 만약 서비스의 조건들에 자격이 있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해당 세입자/거주인은 건물 소유주, 집주인, 건물 매니저에 의해 발생된 미결제 금액의 지불 없이도 건물의 기록 상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세입자/입주인이 건물의 세입자이거나 주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서비스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도국은 해당 세입자/거주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3717. 미결제 이외의 서비스 중단

A. 위험한 장비.

1. 수도국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거나 수도국의 규정이나 법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장소/건물의 수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국은 소비자/사용자의 건물에 있는 장비나 도구를 검사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국은 만약 위험한 장비나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타인에게 해를 주는 서비스. 수도국은 한 소비자/사용자의 요구가 과다하거나 다른 소비자/사용자의 서비스 공급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건물/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 사기 또는 학대 수도국은 사기, 학대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수돗물이나 장소의 사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장소에 수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D. 준수 거부. 수도국은 만약 소비자/사용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 영업일 5 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도국의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사용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준수 거부가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보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도국은 통지 없이 즉각적으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 서비스 중단을 위한 소비자/사용자의 요청. 소비자/사용자는 수도국에 통보함으로써 수도 서비스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48 시간 이내에 중단될 것입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하면 소비자/사용자가 해당 통지를 수도국이 받을 때까지 해당 장소에 제공된 수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F. 복구-재연결 수수료. 수도국은 2500 항 요금, 수수료, 요금에 의거한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중단된 서비스 복구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 3718. 계량기 오류

A. 계량기 인증.

1. 수도국이 설치한 모든 계량기는 제조자가 인증하고 미국 수도 작업협회(AWWA)가 규정하여 등급이 매겨집니다. 계량기 정확성 검사는 AWWA 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2. 계량기 검사.
 - a. 수도국에 적어도 10 일 전 서면 통보를 하여 소비자/사용자는 수도국이 소비자/사용자의 건물에 있는 계량기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수도국은 소비자/사용자가 현금 디파짓을 내도록 하여 검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 만약 계량기가 AWWA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디파짓은 반환될 것이며, 계량기는 교체될 것입니다. 만약 계량기가 AWWA 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디파짓 금액은 수도국이 검사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사용될 것입니다.
 - d. 소비자/사용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검사가 실시될 때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e. 검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소비자를 위한 서면 보고서는 수도국이 해당 결과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B. 계량기 오류에 대한 청구 금액 조정

1. 빠른 계량기. 검사 후 계량기가 AWWA 의 기준 이상으로 기록을 한다고 발견되면 수도국은 계량기가 사용된, 4 개월을 넘지 않는 해당 기간 동안, 올바른 계량기 검침에 근거하여 소비자/사용자에게 과다 청구된 부과액 전액 돌려줄 것입니다.
2. 늦는 계량기. 검사 후 계량기가 AWWA 의 기준 이하로 기록을 한다고 발견되면 수도국은 계량기가 사용된, 4 개월을 넘지 않는 해당 기간 동안, 올바른 계량기 검침에 근거하여 소비자/사용자에게 과소 청구된 부과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록이 안 되는 계량기. 수도국은 계량기가 기록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소비자/사용자에게 배수한 수돗물에 대해 소비자/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해당 청구액은 같은 기간 동안 과거 2년 간의 평균에 근거한 추정액입니다. 만약 2년 미만의 정보만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분류가 동일한 다른 소비자/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청구액을 추정할 것입니다.

§ 3719. 소비자/사용자 계좌 정보.

이름, 주소 및 수도국의 소비자/사용자와 납세자 기록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도국의 기록으로부터 편집한 주소 목록은 수도국의 임원이나 직원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소비자 동의가 있거나 또는 없이 이루어지는데,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개는 법정 명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방이나 주법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수도국은 소비자 기록을 제 3의 에이전시에게 소비자 계좌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경로로 제공할 수 있고 해당 계좌가 미결제인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국에 정확하고 최신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3720. 누수 크레딧.

수도국은 누수를 경험한 소비자/사용자에게 누수가 수리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한 번의 누수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수 크레딧은 "단 한번"만 가능하며, 수도 요율을 두 번의 청구 주기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낮은 단계로 내려서 계산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국은 소비자에게 가능한 누수를 통지해야 하는 책임이 없습니다.